

취업지원처 규정

- 제정 : 1997. 03. 01
- 개정 : 2004. 04. 01
- 개정 : 2005. 03. 01
- 개정 : 2011. 10. 01
- 개정 : 2017. 04. 01
- 개정 : 2017. 05. 01
- 개정 : 2018. 04. 01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부서의 명칭은 수원대학교 취업지원처(이하 “취업지원처”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취업지원처는 수원대학교 내에 둔다.

제3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의 전공과 적성 및 요구에 부응하는 현장 중심형 취업지원을 강화,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취업지원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본 취업지원처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취업관련 인프라 구축 및 지원
2. 진로·취업지도 관련 상담 지원
3. 취업처 개발, 취업정보 수집을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추천
4. 국·내외 취업활동 지원
5. 정부 및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과의 청년고용 촉진 유관 사업 수행
6. 기타 학생 취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조 직

제5조(처장)

1. 취업지원처 처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필요시 부처장을 둘 수 있다.
2. 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취업지원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3. 부처장은 처장이 위임한 직무를 수행하며 처장 유고시에는 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경력개발위원장) 삭제

제7조(직원) 삭제

제3장 취업지원운영위원회

제8조(취업지원운영위원회) 취업지원처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하고 취업 및 상담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은 취업지원처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각 당해연도 창업지원단장, 단과대학 학장, 학생지원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간사는 취업지원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0조(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시 사전 통보하여 소집하며 다음 사항을 논의한다.

1. 취업대책수립 및 추진
2. 재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소집)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